

# 협회기사

## 제 7 회 이사회

일시; 1971년 3월 29일

### 보고사항

#### (1) 주택설계작품 시상 및 전시회 일자 결정

자. 1971. 4. 13 (6일간 국립공보관.)  
자. 1971. 4. 18

### 부의사항

#### 1) 윤리위원회 결의사항

① 충남지부 양세환, 전 병근, 회원간 분쟁건은  
윤리위원회 판결대로 수락 결의.  
(판결내용)

전 병근 회원은 삼호방직 대전공장 증축설계  
용역을 함에 있어 윤리규약 제5조, 윤리위원  
회 규정 제11조 7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견  
책처분키로 결의.

#### 2) 경기도지부

㊂ 1급 건축사 김 동진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  
지 아니하고 1969년 6월부터 정회원 회비를  
장기 체납 함으로서 판할 지부장으로 하여금  
사무적인 착오를 초래케 함으로서 건축사의  
품위를 손상케 하였으므로 정관 제10조 규정  
을 적용, 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 처  
분키로 결의.

㊂ 1급 건축사 심의권 회원은 경기지부장 재임  
시 판내 김 동진 회원을 무단 폐업 보고를  
함으로서 협회 행정에 혼란을 초래케하여 건  
축사의 품위를 손상케 한 행위로서 정관 제  
10, 11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처분 결의.

㊂ 1급 건축사 김 응연 회원은 경기도 지부장  
재임시 전임 지부장이 임의폐업조치를 한 김  
동진 회원을 본회의 지시없이 임의로 복구조  
치를 하므로서 협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케한  
행위로 정관 제10, 11조 규정에 의거 권고처  
분 결의.

#### 3) 강원도지부

2급 건축사 심명택 회원은 원주 분소장 재  
임시 지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서등록 사  
무를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케 함에 감독 소  
홀로 사실보다 적게 보고 된 사실이 적발되

어 분소장직을 인책 사임하고 동시에 실적회  
비 차액도 변상하였는바 이는 회원으로서 전  
축사의 품위를 손상케 한 행위로 정관 제10,  
11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 처분키로 결의.

#### (2) 회원 해외 파견 추천의뢰(건설부)

##### 1) 서독 파견

1급 건축사 이 춘상 회원(이 춘상 건축연구소)  
를 파견키로 결의.

##### 2) 화란 파견

1급 건축사 차 광용 회원(한협건축연구소) 을  
파견키로 결의.

##### 3) 감사패 증정

양 택식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설행정의 지대한  
공로에 감사패를 4월 12일 증정키로 결의.

## 제 8 회 이사회

일시; 1971년 4월 7일

### 보고사항

1) 서울시지부 회원 강재용(도시건축) 숙환 별  
세.

2) 건설부 건축과 한규봉 기사 주택과 기좌로  
승격 전출.

### 부의사항

#### 1) 보조원 수첩건

건축사 업무 보조원 행정관청 출입증은 지부에  
서 제정 건축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주도록 관  
계관청과 합의하여 집행하도록 서울시지부장에  
게 권유키로 결의.

(무면허 업자의 난립을 방지키 위한 방안)

#### 2) 주택설계작품도집 발행건

권당 실비액인 500원식으로 판매키로 결의.

#### 3) 무면허 설계업소 단속 의뢰(경기도 지부)

개봉동지구에 무면허 설계업자가 6개소나 영업  
행위를 하고 있다는 경기도 지부장의 보고에 의  
하여 이를 판할관계처에 고발키로 결의.

#### 4) 건축사법 개정(안)

이미 시안이 된 사법개정(안)을 조속한 시일내  
에 업무연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토록 결의.